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95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8. 10. 17.
4. 회부일자 : 2018. 10. 29.

Ⅱ. 개정이유

○ 2019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단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1개교의 위치를 이전하며,

○ 존속기간 만료된 2개교(원) 폐지하고, 기 설치된 서울특별시립학교 39개교의 도로명주소를 정비 및 변경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1. 초등학교 : 폐지 1개교, 위치 정비 14개교

가. 폐지 : 1개교(존속기간 만료)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강서구 양천로55길 22)

나. 위치 정비 : 14개교(도로명주소로 변경 및 정비)

○ 서부교육지원청

- 서울가재울초등학교(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61)
- 서울연은초등학교(은평구 백련산로2길 35)

○ 남부교육지원청

- 서울하늘숲초등학교(구로구 오리로 1106)
- 서울금나래초등학교(금천구 시흥대로79길 37)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강솔초등학교(강동구 고덕로97길 80)
- 서울잠일초등학교(송파구 올림픽로 95)
- 서울위례별초등학교(송파구 위례광장로 243)
- 서울해누리초등학교(송파구 송파대로37길 95)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서울공진초등학교(강서구 마곡서로 33)
- 서울공항초등학교(강서구 마곡서1로 68)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서울율현초등학교(강남구 밤고개로21길 15)
- 서울자곡초등학교(강남구 자곡로 150)
- 서울언남초등학교(서초구 헌릉로8길 42)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서울숭신초등학교(성동구 마장로 161)

2. 중학교 : 위치 정비 4개교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해누리중학교(송파구 송파대로37길 95)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마곡중학교(강서구 마곡중앙5로 58)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내곡중학교(서초구 청계산로7길 9-20)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남서울중학교(관악구 남부순환로172길 97)

3, 고등학교 : 위치 이전 1개교, 위치 정비 2개교

가. 위치 이전 : 1개교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공항고등학교(강서구 방화대로34길 43)

나. 위치 정비 : 2개교(도로명주소로 변경 및 정비)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도선고등학교(성동구 마장로 156)
- 금호고등학교(성동구 금호로 118)

4, 각종학교 : 위치 정비 1개교

○ 남부교육지원청

-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금천구 남부순환로128길 42)

5, 유치원 : 신설 1개원, 폐지 1개원, 위치 정비 18개교

가. 신설 : 1개원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서울구암유치원(동작구 은천로 93)

나. 폐지 : 1개원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병설유치원(강서구 양천로55길 22)

다. 위치 정비 : 2개교(도로명주소로 변경 및 정비)

○ 동부교육지원청

- 서울새솔유치원(중랑구 신내역로1길 136)

○ 서부교육지원청

- 서울가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61)
- 서울연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평구 백련산로2길 35)

○ 남부교육지원청

- 서울금나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금천구 시흥대로79길 37)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동구 고덕로97길 80)
- 서울잠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송파구 올림픽로 95)
- 서울위례별유치원(송파구 위례순환로 371)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서울공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서구 마곡서로 33)
- 서울공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서구 마곡서1로 68)
- 서울마곡유치원(강서구 마곡서1로 139-13)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서울언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19)
- 서울율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남구 밤고개로21길 15)
- 서울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남구 자곡로 150)
- 서울은곡유치원(강남구 헌릉로569길 41)
- 서울언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서초구 헌릉로8길 42)
- 서울청계숲유치원(서초구 청계산로11길 14)

- 서울양재유치원(서초구 바우뫼로18길 14)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서울숭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성동구 마장로 161)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가.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별첨 2〕)

3.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4. 기 타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나. 입법예고(2018. 9. 19. ~ 10. 8.)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Ⅴ.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95호로 제출되어 2018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자로 단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1개교의 위치를 이전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2개교(원)을 폐지하고, 39개교의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구암유치원 신설의 건

○ 동 개정조례안에 제출된 구암유치원은 관악구에 위치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하는 매입형 유치원의 형태로써 내년 3월 1일에 개원하기 위한 것인바,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과 예산심의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관리계획의 승인과 예산 심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적 취지 및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구암유치원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교명제정자문위원회 심의결과 '구암유치원'으로 결정[1]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도 '구암유치원'으로 최종 결정(교명제정심의위원회-3,

1)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7752(2018.9.14.)

2018.9.19.)되었는바, 교명과 관련해서도 절차적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학교명 심의 결과

가칭 학교명	검토 명칭	교명제정자문위원회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선정명칭	심의일	선정명칭	심의일
구암유치원	관봉유, 거북바위유, 단단유, 국사봉유, 은천유	서울구암유치원	2018.9.12.	서울구암유치원	2018.9.19

나. 공항고 이전의 건

○ 공항고 이전의 건은 현재 강서구 방화 2동에 위치한 공항고등학교를 2019년 3월에 강서구 마곡동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 조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 그러나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공항고의 학교 이전 공정률이 70%에 불과하여 당초 이전계획인 2019년 3월 이전 및 개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건설업체[2]와 책임건설사업관리단[3]은 공항고 건축공사의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실제 공항고 이전은 8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점에서 미리 이전 대상 위치를 동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혼란을 가져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바, 동 건은 학교 이전 일정이 확정된 후 다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공기연장신청서 제출의 건', 장위건설주식회사 공항고-공사-0126.(2018.10.31.)

3) '건축공사 공기연장 신청서의 타당성 검토 보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이광주, 무영공항고 2018-10-15호(2018.10.31.)

[표-2] 공항고 이전 현황

구분	위치	면적(㎡)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교지	교사			
이전전	강서구 개화동로 495	18,713	14,260	25	495명	19.8명
이전후	강서구 방화대로34길 43	13,390	13,452	33(특3)	780명	26.0명

다. 폐지의 건

○ 동 폐지의 건은 공진초공진분교장과 공진초공진분교장병설유치원을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상기 분교장과 병설유치원은 공진초 및 공진초병설유치원의 마곡지구 이전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운영되던 것으로서, 교육청은 기존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해 있던 공진초 및 병설유치원을 2014년 11월 강서구 마곡동으로 학교를 이전하였고, 기존의 학교가 운영되던 가양동의 공진초 이적지는 2015년 2월 28일까지 분교장으로 운영되었는바,

이를 동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동 조례에 규정된 “존속기한의 만

료”[4]에 따른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공진초분교장 및 병설유치원의 운영이 2015년에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사항을 4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동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동 건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조례 관리 행태를 보여주는 일례로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 관리 및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위치 정비의 건

○ 동 개정조례안에 제출된 위치 정비의 건은 총 39개교로서 학교 이전 및 신설에 대한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고 잘못된 위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는 지난 제283회 임시회 회의시 동 조례에 표기된 학교 주소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 후 일괄적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입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일괄 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례에 잘못된 위치가 표기된 학교가 적지 않은바, 서울시교육청의 추가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교 주소의 잘못된 오기는 시민들에게 학교 위치의 혼란을 가져오게 하여 법적안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동일한 사유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서

---

4) 부칙 < 제5691호, 2014. 5. 8.>

제2조(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 등의 존속기한) 별표1의 강서의 명칭란 중 신설규정인 "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과 별표7의 강서의 명칭란 중 신설규정인 "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병설유치원"의 존속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울시교육청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 조례안 미반영 주소 오류 학교

학교명	조례상 위치	실제 위치
서울북성초등학교	서대문구 북아현로5나길 84	서대문구 북아현로1나길 22
서울북성유치원	서대문구 북아현로5나길 86-10	서대문구 북아현로1나길 32
서울가재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대문구 남가좌동 164-1	서대문구 모래내로 15길 61
수도여자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용산구 두텁바위로27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73

□ **이상으로「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교육기본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1호, 2017.3.21., 일부개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시행 2018.1.1.] [법률 제11212호, 2012.1.26.,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